공업, 광업, 에너지, 정보통신 분야
2013년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신청 · 접수 공고

「2013년도 지정업체 선정 및 2014년도 인원배정 고시(병무청, 5.30)」에 의거 공업, 광업, 에너지, 정보통신 분야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신청 ·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13년 6월 10일
중 소 기 업 청 장

※ 반드시 「2013년도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신청 · 접수 지침」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 (http://sanhakin.smba.go.kr)

1 신청대상 및 분야

□ 신청대상

○ (신규)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중소기업**(법인만 해당)**

* 동일법인내 다수의 공장(사업장)이 있는 경우 한 개 공장(사업장)만 신청가능

< 참고 > 병역지정업체 선정 제외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기업
- 고발 또는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
-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관리 불량 사업장으로 공표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
-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

○ (기존) 「병역법」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

* 동일법인내 지정업체가 2개 이상인 법인은 1개 지정업체만 신청 가능

□ 세부 신청요건 및 분야(신규 · 기존지정업체 공통)

분 야	요 건	
	공통사항	
공업	**※ 아래사항 모두 충족** · 동일법인내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병역지정업체로 미지정된 기업 · 지정희망 공장 · 사업장내 상시근로자 10인이상 (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) * 단, 특성화고 · 마이스터고와 산학연계 3자(학교-학생-업체) 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· 제조 · 사업시설이 타 기업과 물리적으로 분리 · 제조 · 매출 실적이 있을 것	· 제조업종 기업 * 철강, 기계, 전기, 전자, 화학, 섬유, 신발, 시멘트 · 요업, 생활용품 등 기타
통신기기 제조업		· 통신기기 제조업종
정보처리 관련업		**※ 아래사항 모두 충족** · 「부가가치세법」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기업 · 당해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(전문연구요원제도)로 선정 혹은 신청되어 있지 않은 기업 중 S/W개발을 주된 사업(전체 매출의 30% 이상)인 기업
광업	· 광물(석탄 제외)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(법인 내 연구인력 포함 可) 이상 기업 · 선광 · 제련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기업	
에너지	·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· 가스업을 영위하는 기업	

< 참고 > 상시근로자 산정기준

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대표이사, 일용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도 상시근로자로 포함)

2 신청 유형(신규 · 기존 지정업체 공통)

1 취업맞춤반 참여기업(舊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)

○ **"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의 취업맞춤반"** 또는 "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('06년 ~ '12년)" 참여기업 중 **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**

2 중소기업 기술사관 인력양성사업 참여기업

○ "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" 참여기업으로서 **협약학생 고용 및 고용예정기업**

3 마이스터고 산학협력 기업

○ **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**한 중소기업으로서 **협약학교 졸업생 고용한 기업**

* 중앙부처,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마이스터 산학협력사업 또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마이스터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업

4 특성화고 산학협력 참여기업

○ 특성화고와 산학협력한 중소기업으로서 **협약학교 졸업생 고용한 기업**

* 중앙부처,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특성화고 산학협력사업 협약기업, 중소기업 계약학과(기존 지정업체만 해당) 참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특성화고와 산학협력을 체결한 기업

5 기타 : 참여유형 1 ~ 4 이외의 기업

※ 기업은 신청유형1 ~ 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(중복신청 불가)

※ **신청유형 1 ~ 3 참여기업과 협약학생은 우선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**

3 추천평가 및 등급부여(신규·기존 지정업체 공통)

□ 추천방법

○ "추천기준 및 배점"에 따라 **평가점수 상위 순으로** 순위를 부여하여 **10개 등급(A~J등급)으로 균등 배분 및 등급 부여**

□ 추천기준 및 배점

<table>
<tr><th>추 천 기 준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〈 산학협력 : 20점 〉
1. 우선선정 산학협력 참여기업(참여 유형 1 ~ 3)
* 추천등급(점수)에 관계없이 우선 선정 및 배정
2. 중소기업 특성화고 참여기업(참여 유형 4)</td><td>해당기업 20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〈 기술/경영혁신 : 공업 25점, 광업 · 에너지/정보통신 30점 〉
3. R&D 투자기업(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(R&D) 투자 비율)
<table>
<tr><th>신청 분야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공업</td><td>5%이상(15점), 5%미만~3%이상(10점), 3%미만~1%이상(5점), 1%미만(2점)</td></tr>
<tr><td>광업 · 에너지</td><td>5%이상(10점), 5%미만~3%이상(6점), 3%미만(2점)</td></tr>
<tr><td>정보통신</td><td>10%이상(10점), 10%미만~7%이상(8점), 7%미만~4%이상(6점), 4%미만~1%이상(2점), 1%미만(2점)</td></tr>
</table></td><td>신청 분야별로 배점</td></tr>
<tr><td>4. 기술력 보유기업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항목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인증 보유</td><td>싱글PPM 품질혁신인증기업, 성능인증(EPC마크) 획득기업, 환경표지인증기업, ISO9001, ISO 14001 또는 TS16949(1건만 인정), KS인증기업, Q(또는 건) 또는 GR 획득기업(1건만 인정), 단체표준품질인증기업, NET 또는 NEP마크 획득기업(1건만 인정), 특허 · 실용신안권 보유기업(1건만 인정), 해외규격인증획득기업, GS 인증기업(정보통신 분야만 해당), 프로그램 등록증(정보통신 분야만 해당, 건당 2점 최대6점) 중 해당기업</td><td>3건 이상 10점
2건 7점
1건 4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기업 유형</td><td>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(기술혁신형중소기업), 경영혁신형 기업, 부품소재 전문기업, 강소기업(으뜸기업, 취업하고 싶은기업 등), 뿌리기술 전문기업, 수출유망 중소기업(정보통신 분야만 해당) 중 해당기업</td><td>해당기업 10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/table></td><td>2개 구분(인증보유, 기업유형)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추 천 기 준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5. 안전관리 우수기업(광업 · 에너지 분야만 해당)
*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기업(10점), 최근 3년 이내 무사고 기업(7점), 최근 1년 이내 무사고 기업(4점), 해당없음(0점)</td><td>10점 ~ 0점</td></tr>
<tr><td>6. 정보통신 관련 우수기업(정보통신 분야만 해당)
* 정보통신 관련 지원사업 수행 완료기업
(주관기관의 수행결과 기준)</td><td>우수이상 10점
보통이하/단순 완료 5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〈 수출 : 공업 20점, 광업 · 에너지/정보통신 15점 〉
7.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이 높은 기업
<table>
<tr><th colspan="2">신청 분야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 colspan="2">공업 · 광업 · 에너지</td><td>50%이상(15점), 50%미만 ~ 35%이상(12점), 35%미만 ~ 20%이상(9점), 20%미만 ~ 10%이상(6점), 10%미만(3점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정보통신</td><td>통신기기 제조업</td><td>10%이상(15점), 10%미만 ~ 7%이상(12점), 7%미만 ~ 4%이상(9점), 4%미만 ~ 1%이상(6점), 1%미만(3점)</td></tr>
<tr><td>정보 처리업</td><td>5%이상(15점), 5%미만 ~ 3%이상(10점), 3%미만 ~ 1%이상(5점), 1%미만(3점)</td></tr>
</table></td><td>신청 분야별로 배점</td></tr>
<tr><td>8.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공업 분야만 해당)
* 수출역량강화사업, 수출유망 중소기업, 글로벌 강소기업, 종합인증우수기업(수출기업) 중 해당되는 기업</td><td>해당기업 5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〈 일자리 창출 : 25점 〉
9. 고용창출기업 또는 창업기업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배점</th></tr>
<tr><td>고용창출기업</td><td>< '12년 대비 '13년 종업원 증가율 >
30%이상(15점), 30%미만 ~ 20%이상(12점), 20%미만 ~ 10%이상(9점), 10%미만 ~ 5%이상(6점), 5%미만(3점)</td></tr>
<tr><td>창업기업</td><td><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기간)
3년 이내(15점), 3년 초과 ~ 5년 이내(10점), 5년 초과 ~ 7년 이내(5점), 7년 초과(3점)</td></tr>
</table></td><td>2개 구분(고용창출기업, 창업기업) 중 높은 점수 1건만 인정</td></tr>
<tr><td>10.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
* 일자리 함께하기(시간제 일자리창출), 산학맞춤 기술인력양성사업, HRD 우수인증기업, 중소기업청 주최(주관) 채용박람회 참여기업,</td><td>2개 해당 10점
1개 해당 5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h>추 천 기 준</th><th>배 점</th></tr>
<tr><td>〈 균형성장 : 25점 〉</td><td></td></tr>
<tr><td>11. 소기업, 여성기업, 장애인 기업, 장애인 고용우수기업</td><td>2개 해당 10점
1개 해당 5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12. 기업 소재지역
* 郡 소재(15점), 지방소재(10점), 광역시소재(5점), 수도권소재(2점)</td><td>15점 ~2점</td></tr>
<tr><td>〈 기타 : 5점 〉
13. 정부시책 참여 기업 등
< 관련 서류 미제출 >
①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선정기업
② 협업사업계획 승인 기업
③ 정보화경영체제(IMS) 인증기업
④ 수탁·위탁거래 우수기업
⑤ 클린(Clean) 사업장 인정기업
⑥ 종합인증우수기업(물류기업)

< 관련 서류 제출 >
⑦ 중소기업청년인턴제 참여기업
⑧ 장애인고용기업
⑨ 6개 뿌리산업 업종 영위 기업
⑩ 산업단지(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,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지구, 마산 · 익산 수출자유지역 포함) 입주기업
⑪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내 입주기업(BI 입주기업 포함)
⑫ 협동화단지 입주기업
⑬ 정부표창 또는 상을 수상한 기업

※ ① ~ ⑤ 관련 서류 미제출, 해당기업에 대해서는 접수기관에서 확인

※ 건당 1점, 최대 5점까지 부여</td><td>5건 5점
4건 4점
3건 3점
2건 2점
1건 1점
해당없음 0점</td></tr>
<tr><td>합 계</td><td>120점</td></tr>
</table>

* 동일 점수 경합시 추천기준 항목순서(1, 2, 3 …)로 배점이 높은 기업을 우선 추천

4 신청 · 접수 및 구비서류

□ 신청 · 접수기간 : ‘13.6.10 ~ 6.30

○ 온라인(sanhakin.smba.go.kr)으로 신청 · 접수 후에, 증빙자료는 분야별 접수기관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송부

* 우편송부시 등기우편으로 해야하며, 6.28일 등기소인까지 유효함
* 분야별 증빙자료 접수기관
  - (공업 · 광업 · 에너지 분야) 지방중기청, 중소기업중앙회(지역본부), 한국산업단지공단(지역본부), 대한상공회의소(지방상공회의소),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(지회)
  - (통신기기제조 · 정보처리 분야) 벤처기업협회

□ 구비서류

번호	제출 서류	제조업 (통신기기 제조 포함)	광업 · 에너지업	정보처리 관련업
1	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**(신규업체만 해당)**	1부	1부	1부
2	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세부신청서	1부	1부	1부
3	특성화고 · 마이스터고 · 기술사관 졸업생 근무자 명부	1부	1부	1부
4	법인등기부 등본(말소부분 포함) 사본	1부	1부	1부
5	금년 발행한 공장등록증명서(공장등록증 불가) * 단, 소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용도가 “공장”으로 허가된 건축물 관리대상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가능	1부	1부	1부
6	사업자 등록증 사본	-	-	1부
7	법인전체와 신청기업(공장 또는 사업장)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	각1부	각1부	각1부
8	최근 결산년도(2012년도) 재무제표 사본 (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)	1부	1부	1부
9	사업에 관한 허가증 또는 면허증 사본 **(신규업체만 해당)**	-	1부	-
10	광업원부 등본 원본**(신규업체만 해당)**	-	1부	-
11	주력업종 확인서	-	-	1부
12	자가진단표 및 추천기준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	각 1부	각 1부	각 1부

5 추진 절차 및 문의처

□ 추진 절차

신청 · 접수 (6.10 ~ 6.30)	총괄 · 정리 (7.26)	추 천 (7.31)	심사 · 선정 (10월 이후)
○ 신청 · 접수 (sanhakin.smba.go.kr) ○ 증빙자류 제출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(기술인재양성부)	중소기업청 (인력개발과)	병무청 (산업지원과)

□ 연락처

○ 제도 총괄 : 병무청 산업지원과(042-481-2815, 2816)

○ 추천 총괄 : 중기청 인력개발과(국번없이 1357)

○ 신청 · 접수 총괄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인재양성부(042-388-0336)
-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(02-2124-3353)
- 대한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(02-6050-3425)
-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재애로개선팀(070-8895-7055)
-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정책기획팀(031-628-9680)
- 벤처기업협회 채용지원팀(02-890-0613)

○ 신청 사이트(sanhakin.smba.go.kr) 관련 문의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(042-388-0344,0339,0340,0345/국번없이1357)